긴급입찰 사유서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미지테러물질 추적·확인 및 특성예측 기술개발(Ⅲ)

○ 사업금액 : 200,000,000원

○ 사업기간 : 계약 후 ~ 2026년 11월 30일까지

○ 조달방식 : 중앙조달

○ 계약방식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방법)

※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1조제1항제10호나목 (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 제한경쟁)

※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의2제1항제2호(추정가격 1억원 이상 중소기업 제한경쟁), 제2조의3제1항2호(비영리법인참여 예외 규정 적용), 제7조제1항제4호(특정한 기술·용역이 필요한 경우)에 따라 실험연구가 가능한 연구실을 보유한 자

□ 사업목적

○ 미지테러물질의 신속한 추적·확인과 적절한 대응 및 조치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 마련

○ 미지·변종물질의 수용체-화학물질 상호작용에 기반한 독성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인체노출 시 건강보호 조치를 위한 정보 제공

□ 긴급입찰 근거

○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5조제4항

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□ 긴급입찰 사유

○ **(국가 안전 및 테러 대응의 긴급성)** 본 사업은 미지 화학 테러물질

발생 시 신속한 물질규명 및 독성예측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대응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함.

- 최근 노비촉, VX 등 신종·변종 화학물질의 출현 증가로 기존 분석 체계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사업 추진 지연 시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역량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

○ **(초동 대응(골든타임) 확보 필요성)** 화학 테러 또는 사고 발생 시 물질 식별과 독성 평가의 신속성은 피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. 입찰 지연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, 분석·예측 기술 확보가 지연되어 초동 대응 골든타임 내 과학적 지원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음

○ **(테러대응 지원기관으로서의 법적·사회적 책무)** 우리 기관은 국가 테러 대응 지원기관으로서 화학물질 사고 및 테러 상황 시 과학적 분석 및 위해성 평가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음.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시급성이 요구되며, 통상적인 입찰 절차 적용 시 국가 위기 대응 기능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

○ **(신규·미지 화학물질 대응 공백 발생 우려)** 산업용 화학물질 및 불법 합성물질의 다양화로 인해 기존 DB 기반의 독성 예측 및 물성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함. 사업 지연 시 미지 물질의 구조 추정, 물리화학적 특성 예측, 독성 기전 분석 등 핵심 기술 확보가 늦어져 대응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

○ **(국가 주요 행사 및 상시 테러 위협 대응 필요)** 국내외 주요 행사,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화학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, 관련 기술의 조기 확보는 필수적임. 입찰 지연은 사전 대비 역량을 저하시켜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

□ 결론

○ 상기와 같이 본 사업은 국가 안전 확보 및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로서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4항에 따른 입찰공고기간 단축 및 긴급 입찰 적용이 타당함.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긴급입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화학물질안전원